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 유해정보 위험평가 제도〉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21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구체화 및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 제도	3
2. 권리침해정보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삭제 기한 구체화 등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1. 26.

다. 회 부 일 : 2025. 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설계 구조나 알고리즘에 내재된 청소년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이행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지연하는 원인이 될 여지가 있음. 아울러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역시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

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의 전송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를 매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나.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조치하도록 구체화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의2제4항)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구체화 및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 제도(안 제32조의5, 제42조의3제3항 각 호 및 제42조의4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에 따른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 제출을 추가함(안 제32조의5).
-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함(안 제42조의3제3항).
 -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 및 조치 내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 의무 또는 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위험 평가의 결과 및 조치 내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② (생략)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한다.
<신설>	1.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보 차단·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청소년유해정보 위험 평가) ①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정보가 전송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주기·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위협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의3.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u><신 설></u> 6. ~ 12. (생 략)	<u>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u>5의4. 제4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6. ~ 12.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최근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로 인하여 청소년이 각종 유해정보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정서적·신체적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관련된 청소년보호법제의 일반법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유해한 인터넷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특화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밀접한 관계를 맺음.

-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유해정보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임¹⁾²⁾.
-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동법 제42조의2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에 대한 접근 제한을 규정함.
- 나아가, 동법 제42조의3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및 보호계획 수립 업무를 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³⁾,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가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참고로 과거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러한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시행령 또한 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동일한 절차에 따르고 있음.

3) 전기통신정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채증·조사, 의견제출, 심의·의결 절차에 통상적으로 4주 이상 소요되고 이후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에도 2주일 내외로 소요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지연되는 경우 청소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청소년유해정보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보다 사전적인 관리 체계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청소년유해정보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동시에 그러한 평가 결과와 조치 내역에 관한 보고서 작성·제출의무도 부과함.
- 먼저,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청소년유해정보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국외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에 따른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 제출'을 추가하여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 사업자의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다만,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 등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 의무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함.
- 안 제42조의4제1항은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를 규정하면서 그 의

유해매체물 지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현재 '25.4.22. 이후 전기통신정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하지 못하고 있음).

무자를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하여, ①‘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을 의무자로 할 것인지’혹은 ②‘의무자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에는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급부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 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보임.

- 만일 청소년 보호 효과를 강화하려면 안 제42조의4제1항 문구를 수정하여, 기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자에서 수범자를 확대시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까지 규율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임.

○ 둘째,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 관련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2조의4제1항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문언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인지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4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지도 않으면서 제3항에 따라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점검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나 기준이 불명확한 가운데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행정의 자의적 집행이 문제되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점검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기업의 영업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점검의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와 관련한 문구를 바꾼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취지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에서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있는데, 자칫 자구 수정이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기속에서 재량으로 바꾸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음.

므로, 기존과 같이 서술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또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로 명시한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4호의 경우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신규·소규모 기업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어 청소년 보호가 취약하므로, 위험성 평가 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적용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위임입법의 한계, 영업 비밀의 침해,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유해성평가 관련하여 추상적 용어 사용 및 광범위한 위임에 따른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국내대리인 업무범위 확대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집행을 담보하기보다는 국내사업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함.

2. 권리침해정보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삭제 기한 구체화 등(안 제44조의2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안 제44조의2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며(안 제44조의2제3항),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의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안 제44조의2제4항)
 제1항에 따른 정보 삭제요청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6항).
-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2항제4호의4).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② -----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

③ -----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

④ -----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생략)

<신 설>

⑥ (생략)

제7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3. (생략)

<신 설>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② -----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제44조의2제6항을 위반하
여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보관하

<u>4의4.</u> (생략) ③ · ④ (생략)	<u>지 아니한 자</u> <u>4의5.</u> (현행 제4호의4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의 삭제와 관련하여⁵⁾ ①일반 공개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 권리가 침해된 경우, ②표시방법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 중 ①권리 침해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 시 삭제 기한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며, ②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기한을 수정함으로써 권리 침해 당한 국민과 피해 우려 청소년에 대해 사업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며, 기

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한의 구체화 같은 경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절한 제도 개선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임시조치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함.
- 일단 임시조치를 하게 되어 콘텐츠에 대한 과잉 검열, 과잉 삭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일단 삭제 요청을 하는 등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악의적인 삭제 요청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보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삭제요청의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토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어, 보관된 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권리침해 정보 삭제·임시조치 기한 구체화 차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정보 등의 삭제 기한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는 것, 임시조치 의무화, 관련 정보의 기록·보관 의무 부여 등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4시간 이내 조치 의무 등에 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게시물 삭제 관련하여 24시간의 기한이 현실적으로 준수가 불가능하고, 임시조치 의무화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며, 삭제요청 내용 및

조치 결과의 기록·보관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